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669호
-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3년 3월 29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2. 제안이유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세부공간 개편에 따라 공간별 대관료 및 대관료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주최·주관 행사 진행 시 대관료 면제(제10조)
- 나.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세부 공간별 대관료 명시(별표 3)
 - 1) 노들스탠드 대관료 내용 삭제 및 잔디마당 대관료에 통합
 - 2) 노들라운지, 리허설스튜디오, 노들갤러리 1·2관 대관료 신설
 - 3) 준비 및 철수 대관, 동절기 옥외공간 대관, 30일 이상의 장기 대관 시 대관료의 20% 범위 내에서 할인 가능함을 명시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서울시 주최·주관 행사의 대관료를 면제하고, 시설 및 공간 개편에 따라 공간별 대관료 및 대관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공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현황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현황 》

□ 사업개요

- 위치: 용산구 양녕로 445, 446 일대
- 규모: 연면적 9,349㎡, 조경·기반시설 33,330㎡, 보행육교 574㎡
※ 노들섬 총면적: 119,854㎡
- 조성사업: '15. 2. ~ '19. 11. (사업비: 583억원)
- 시설현황
 - 건축시설: 라이브하우스(456석), 다목적홀 숲, 노들갤러리, 노들서가 등
 - 야외시설: 잔디마당, 노들스퀘어, 서가루프탑, 야외테라스, 보행육교 등
- 운영방식: 운영대행용역(기간: '23.1.1.~12.31. 운영업체: (주)인터파크씨어터)
- 사업예산('23): 3,408백만원

□ 용도별 현황

구분	시설명칭	운영 프로그램	층
음악	라이브하우스, 잔디마당, 리허설스튜디오	기획 및 대관공연	1~3층
전시	노들갤러리 1·2관	전시, 예술체험 등	1층
체험·휴게	노들서가, 노들라운지, 다목적홀 숲, 세미나실(3)	강연, 컨퍼런스 등	1~3층
편익시설	음식점(6), 카페(2), 편의점(1)	식음료 판매	1~3층
업무시설	노들오피스, 운영사무실, 방재실	임대·직영 사무실	1층

- 노들섬은 2015년 한강과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생태·문화 명소 ‘노들꿈섬’ 조성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정식 개관 하였으나, 노들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의 부족, 교통 접근성 불편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 노들섬의 시설 현황은 총 면적 약 12만 제곱미터에 건축 시설로 라이브하우스(456석 규모), 다목적홀 등이 있으며, 야외시설인 노들 스탠드와 노들갤러리(1·2관)와 같은 대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다. 대관료 감면 등 신설(안 제10조)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대관료를 100%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공공시설¹⁾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²⁾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은 법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또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타 시설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일반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1) 공공시설인 공공용재산에 대한 일반 주민의 이용 관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관계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공공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와 다른 것으로 그 산정 방법이나 요금의 결정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145p)

2)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후단 생략)

- 다만 현행과 같은 서울시 직영체제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나, 위탁운영 시 대관료 전액 감면은 무상대관 일수에 따라 수탁기관에게는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행사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규정 예시 》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대관료의 감면) ① 시장은 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대관료의 전액
2. 시가 후원하는 행사 : 대관료의 100분의 50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 그 외 시민청, 시립미술관, 시립과학관, 인재개발원 등도 해당 조례·규칙에 대관료 면제를 명시하고 있음.

라. 대관료 조정(안 별표 3)

- 개정안은 노들섬 공간의 통폐합 등 개편사항에 맞춰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노들스탠드와 잔디마당 통합에 따른 대관료 일원화, ▶노들라운지, 리허설스튜디오, 노들갤러리 용도 변경(신설)에 따른 대관료 규정 추가, ▶ 특정 시기에 대한 대관료 할인 규정 신설 등이 있음.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대관료(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3]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대관료(제9조 제1항 관련)							
		구분	면적(㎡)	대관단위	대관료(원)	비고			구분	면적(㎡)	대관단위	대관료(원)	비고
옥외 공간	노들 마당	잔디마당	2,953	1일	4,400,000	(생략)	옥외 공간	노들 마당	잔디마당	3,817	1일	4,400,000	(현행과 같음)
		노들스탠드	864	1일	1,040,000				㎡당 1,200				
		노들스퀘어	4,038	1일	㎡당 1,200								
기타 공간	노들서가 1층		211	1일	380,000	기타 공간	노들서가 1층		211	1일	380,000		
	노들서가 2층		190	1일	350,000		노들서가 2층		190	1일	350,000		
	유적라운지 류		395	1일	590,000		노들라운지		557	1일	1,003,000		
		리허설스튜디오		118	4시간	200,000	리허설스튜디오		118	4시간	200,000		
		노들갤러리 1관		837	1일	500,000	노들갤러리 1관		837	1일	500,000		
		노들갤러리 2관		492	1일	290,000	노들갤러리 2관		492	1일	290,000		
1. ~ 4. (생략) 5. 본 행사를 위한 준비 대관료는 20% 범위 내에서 할인될 수 있음.						1. ~ 4. (현행과 같음) 5. ----- 준비 및 철수 대관료, 동절기(11~2월) 옥외공간의 대관료, 장기대관(30일 이상) 시 ----- (중복할인 불가)							

- 먼저 노들갤러리 1·2관은 평균 664.5㎡의 규모에 면적 당 594원의 대관료를 책정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규모의 공립 갤러리인 문화비축기지 문화아카이브(659㎡)는 약 800원을 책정하고 있어 노들갤러리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료를 산정한 것으로 보임.
- 노들라운지(1,003천원/일)의 경우, 인접 실내공간이면서 기능이 유사한 노들서가와 동일한 규모 대비 대관료(1,800원/일·㎡)를 책정하였고, 리허설 스튜디오의 대관료는 시설 장비 및 규모가 유사한 민간 연습실³⁾의 대관료의 약 80% 수준으로 노들섬 홍보의 필요성과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3) 리허설 스튜디오 대관료 200천원(4시간 기준) 대비 → 엘피사운드스튜디오(300천원, 강남구), 썬뮤직타운(300천원, 마포구), 곰스튜디오(250천원, 강서구), 165스튜디오(200천원, 서초구)

- 또한, 대관료를 20% 내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경우를 동절기, 옥외 공간 대관, 장기대관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노들섬의 시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됨.
- 그러나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향후 운영이 직영 또는 민간 위탁 중 어느 방식으로 추진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시설의 용도나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이러한 중장기적 전략의 부재는 노들섬의 운영·관리 대행업체의 사업 추진 또한 소극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데, 궁극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 앞서 거시적인 방향성을 먼저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빠른 시일내에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노들섬이 ‘글로벌 예술섬’이라는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